#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9. 25. 기획재경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O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- O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디지털정보과장)
- O 발의일자: 2024. 9. 12.(목)
- 회부일자: 2024. 9. 12.(목)
- 상정 및 의결: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9. 25.)

# 2. 제안이유

○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격한 미래변 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# 3. 주요내용

- O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O 명칭, 기능, 운영 등(안 제3조~안 제5조)
- 사용허가, 사용자의 의무, 사용허가의 제한 등(안 제6조~안 제8조)
-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, 반환, 입장 및 체험 제한(안 제9조~안 제11조)
- O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, 보험가입, 편의시설 설치 등(안 제12조~안 제14조)

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O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  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- O 예산조치: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
- O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- O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O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O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O 입법예고(2024. 8. 12.~9. 2.) 결과: 의견 없음
- O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초연결·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과학 기술,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자율주행, 로봇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체험·교육 시설 설 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- 달서디지털체험센터, 달서디지털창작센터, 달서메타버스체험관 설치 및 위탁 운영,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역주민에 대한 디지털 기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타시설 등과 비교한 결과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이견이 없음.
- 6. **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**: 특이사항 없음
- 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11조제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제11조제6호 중 "애완동물"을 "동물"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금지가"를 "제한이"로 한다.

#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
제11조(입장 및 체험 제한)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동물
7
<u>利</u>
한이